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27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강경숙
차규근 · 황운하 · 김준형
김재원 · 이해민 · 김선민
박은정 · 신장식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 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감

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5조의6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의결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 常任委員”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을 “위원장을”로, “각 1人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의”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常任委員으로서의”를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서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委員의 待遇)”를 “(위원장·위원의 대우)”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상임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감사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 ~ ③ (생 략) <u><신 설></u>	第3條(委員會의 職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u> <u>항 각 호의 사무 중 중앙선거</u> <u>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u> <u>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u> <u>한다. 이 경우 그 심의·의결한</u> <u>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u> <u>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 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u><후단 신설></u> ② ~ ④ (생 략)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 는 <u>常任委員</u>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 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 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 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6條(常任委員) ① <u>中央選舉管理</u> <u>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u>	第5條(委員長) ① ----- -----. <u>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u> <u>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때에 는 <u>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u> ----- ----- ----- ----- -----. 第6條(常任委員) ① <u>위원장을---</u> -----

<u>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u> ② · ③ (생략)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u>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u>으로서 <u>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 때</u>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략) <신설>	-----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의</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u> ----- -----<u>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서의</u>----- 第12條(위원장·위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u>
---	---

②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 <u><신 설></u> ③ (생략) 第15條(事務機構등) ① (생략)	<u>국무총리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상임위원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u> ③ <u>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상임위원은-----</u> ----- ----- ----- ----- -----. ④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5條(事務機構등) ① (현행과
--	--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事務次長 1人을 둔다. <후단 신설>

③ ~ ①⑦ (생략)
<신설>

같음)

② -----
----- . 이 경우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 ①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감사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